제22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 월 14 일

여 수 시 장 [illegible] 여수시장인

여수시 조례 제1774호

붙임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74호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을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중복하여"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를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득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로 한다" 를 "같은 해 12월 15까지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의"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을 "(연구활동

계획 변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연구활동 보고서의 제출)" 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의 제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을 "연구활동" 으로, "의장" 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의장"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활동중인 연구단체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② ------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중복하여** ----------.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 ----------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 ---------- ----------.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득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승인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	**제6조(연구활동 기간)** ① -------- ---------- ---------- **같은 해 12월 15일까지로 한다.** ---------- ----------

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운영 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연장 할 수 있다.	---------- ---------- ---------- ----------.
1.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을 제출한 연구단체 : 당해 연도 12월 10일까지	**<삭 제>**
2. 당해 연도 7월 2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을 제출한 연구단체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삭 제>**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 ---------- ----------.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 변경)** <삭 제>
② ~ ④ (생 략)	①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따라 매년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연구활동** -------- ---------- ---------- **매년 12월 30일까지 의장**-------- ----------.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제출기한은 1월 2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2월 1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7월 2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12월 1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생략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④ (생 략)	② ~ ③ (현행 제3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